

# 방사선장해방어 감독자과정(단기)

Training course on radiation protection for supervisor

## ■ 교육목적

- 원자력 및 방사선 시설을 이용하여 전문 지식 전달과 방사선 방호 및 안전에 관한 역량 강화
- 산업, 의료, 교육 등의 분야에서 방사선안전관리자 역할 또는 직무 수행을 위한 실무자 양성

## ■ 교육대상

-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SRI) 시험 응시자격을 갖춘 분 중 관련 지식 습득이 필요한 분  
※ 단기과정(5일)은 실무경력 1년 인정 과정이 아닙니다.
- 단기과정은 6주 장기과정의 특강만 수강하는 교육입니다.
- SRI 시험 응시 전 정리 및 문제풀이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선행학습을 추천드립니다.

## ■ 교육기간 및 교육장소

- 교육기간 : 2024. 6. 24 (월) ~ 6. 28 (금) / 5일
- 교육장소 : 한국원자력연구원(대전 본원) 원자력교육센터 제1계단강의실(106호)
- 교과목 및 교육시간(안) : [붙임1] 교육 안내문 참조

## ■ 모집인원 및 교육비

- 모집인원: 30명 내외 (※ 6주 과정이 15명 이하일 경우, 폐강)
- 교육비: 600,000원/인 (※ 순수 교육비이며, 숙식 및 교통수단은 본인이 해결)
- 교육비 환불: [붙임4] 교육비 환불 동의서 참조

## ■ 수료기준

- 수료기준: 출석률 80% 이상

## ■ 교육신청 및 교육비 납입

- 신청방법: 첨부된 [붙임2] 수강신청서, [붙임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붙임4] 교육비 환불 동의서(서명 후 스캔본)를 작성하여 E-mail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mail: risri@kaeri.re.kr)  
※ 이메일 송부 시 제목란에 “[SRI특강] 교육수강신청(성명: 흥길동)”을 작성하시어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4. 4. 1.(월) 10:00 부터 선착순 신청, 2024. 4. 26.(금) 18:00 접수마감
- 교육비 납입: 교육신청 완료 후 개인 이메일을 통해 안내 예정(안내예정일: 4월 29일)

## ■ 연락 및 문의처

- 상세한 사항은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교육센터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담당자 연락처: 042-866-6761, risri@kaeri.re.kr
- Homepage: <http://www.kaeri.re.kr/kntc>

# FAQ



교육생

장기 과정과 단기 과정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원자력교육센터



과정구분	교육기간	실무경력 인정	특징	교육비
장기과정	6주	1년 인정	기초이론+ 특강	1,600,000
단기과정	5일	없음	특강	600,000

**장기 과정의 경우, 6주** 기간 동안 4과목에 대한 이론강의와 특강을 제공합니다. 기초부터 심화까지 속도감있게 진행되기 때문에 관련 배경지식이 없으시다면 이해하기에 다소 어려우실 수 있으며, 간단하게 선행학습을 하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단기과정**의 경우, 장기과정 내 특강 파트를 수강할 수 있는 **5일** 과정입니다. 실무경력 1년 인정 교육이 아닌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정리 및 문제풀이 위주의 강의이오니, 반드시 선행학습을 하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FAQ



교육생

온라인 교육도 있나요?



원자력교육센터

대전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집체교육**으로 온라인 교육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교육생

6주 교육 스케줄을 알고 싶어요 !



원자력교육센터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 ~ 오후 5시 까지 진행되며,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교육생

숙식 제공 되나요? 구내식당이나 기숙사 이용은 가능할까요?



원자력교육센터

교육비는 **순수 교육비 + 교재비** 입니다. 숙식은 기본 제공되지 않습니다. 구내식당은 이용 가능 합니다. 단, 기숙사의 경우, 외부인 이용이 불가능한 점 양해바랍니다.



교육생

폐강 가능성도 있나요?



원자력교육센터

15명 이하일 경우 폐강될 수 있습니다.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FAQ



교육생

RI 교육을 들고 SRI 실무경력 인정이 되나요?



원자력교육센터

RI만 인정됩니다. RI(일반면허)는 4주 이상의 교육 수강, SRI(감독자면허)는 6주 이상의 교육 수강을 해야 실무경력이 인정됩니다. RI와 SRI 교육을 모두 수강한다고 SRI 실무경력 2년이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SRI는 실무경력 2년 중 1년만 SRI 교육으로 대체가 가능하며, 실제 실무경력 1년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면허관리실에 문의바랍니다.



교육생

수료기준에 출석, 수료평가가 있던데 자세히 알려주세요.  
수료 못 한 사람도 있나요?



원자력교육센터

1. 출석일 기준으로 80%이상 출석해야 합니다
  2. 수료평가는 4과목에 대하여 각각 100점 만점으로 평균 60점이상 통과입니다 (객관식)
- ※ 재시험 기회가 있으며, 교육수강 후 충분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



교육생

이 교육만 들으면 응시자격이 되나요?



원자력교육센터

반드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응시자격 안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련학과 및 학점이수로 실무 1년을 인정받을 경우에는 본 교육(6주 과정)은 실무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시험 응시자격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이공계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방사선장해방어에 관한 실무(TLD)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 나. 이공계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방사선장해방어에 관한 실무(TLD)에 1년 이상 종사하고 다음의 교육 중 하나를 이수한 사람
- 1)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실시하는 6주 이상의 방사선장해방어의 감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 2) 외국에서 이에 상응하는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자
- 다. 이공계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아래 경력인정조건을 충족하고 방사선장해방어에 관한 실무(TLD)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이공계 4년제 대학을 수료한자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9-13호 별표4의 4개 경력인정분야별로 각각 1과목 포함하여 24학점 이상 취득한 자
- 라. 이공계 4년제 대학에서 원자력(핵)공학, 방사선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방사선장해방어에 관한 실무(TLD)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 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취득 후 방사선장해방어에 관한 실무(TLD)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 바.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취득 후 방사선장해방어에 관한 실무(TLD)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교육 중 하나를 이수한 사람
- 1)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실시하는 6주 이상의 방사선장해방어의 감독에 관한 교육훈련
  - 2) 외국에서 이에 상응하는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
- 사. 이공계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방사선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연속하여 근무한 기간의 합이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아. 이공계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방사선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연속하여 근무한 기간의 합이 2년 이상 종사하고 다음의 교육 중 하나를 이수한 사람
- 1)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실시하는 6주 이상의 방사선장해방어의 감독에 관한 교육훈련
  - 2) 외국에서 이에 상응하는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자
- 자. 이공계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아래 경력인정조건을 충족하고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방사선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연속하여 근무한 기간의 합이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이공계 4년제 대학을 수료한 자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9-13호 별표4의 4개 경력인정분야별로 각각 1과목 포함하여 24학점 이상 취득한 자
- 차. 이공계 4년제 대학에서 원자력(핵)공학, 방사선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방사선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연속하여 근무한 기간의 합이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카.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취득 후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방사선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연속하여 근무한 기간의 합이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 타.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취득 후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방사선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연속하여 근무한 기간의 합이 2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교육 중 하나를 이수한 사람
- 1)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실시하는 6주 이상의 방사선장해방어의 감독에 관한 교육훈련
  - 2) 외국에서 이에 상응하는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자
- 파.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취득한 사람
- 하. 외국에서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를 받았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 2023-1회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시험 응시(접수)안내에서 발췌하였으며, 반드시 원자력관계면허시험 홈페이지에서 당해년도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